■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4.>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문서로 한정함)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
Request for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아래 '공용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신청문서정보 Document Information	제출 대상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아포스티유 / []본부영사확인서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문서의 명칭 Document Label		
	문서발급기관 Office of Origin		
	기관장 성명 Head of Office		

구분 Case Type	[]본인 Individual	[]대리인 Agent	[]회사 Company	[]기타() Others

신청인 또는 위임인 Applicant or Principal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대리인 Agent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Applicant	[] 가족 또는 지인 Family or Acquaintance [] 대행사 Agency () [] 기타 Others ()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문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공용란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 여부	[] 발급 [] 불허		
발급일		발급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신청인의 문서 제출 대상 국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정보와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정보 및 발급 대상 문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문서 제출 대상 국가 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상문서를 실제로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는지에 관한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개인정보
 · 발급 대상 문서의 사본에 포함된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공 가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국가 법령에 따름

2.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심사·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가 대상국가에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e of Personal Information>

1. Information regarding the issued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and/or Principal may be provided to government bodie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upon request.
 -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Government bodie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 The purpose for which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To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or Principal requested to be issued with the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underlying document
 - Particular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or Principal stated in the Request for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or Principal stated in the copied underlying document(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listed in Article 1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port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 or foreigner's registration number stated in Article 19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if the document contains such information)
 - The period for which the recipient retain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Decided pursuan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2. Disagreeing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affect the process of issuing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lease note, however, that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not b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if you do not provide your consent.

[] 동의함 Agree　　[] 동의하지 않음 Disagree

신청인 : (서명)
Applicant : (signature)

[주의사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Note]

Unde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the request for an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may be deni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documents relating to the request are confirmed to have been forged;
2. wher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not verifiable through the process specified in Article 5, such cases as documents issued in a foreign country.